노인을 보호하는 힘, 이미 우리안에 있습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

www.noinboho.or.kr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NO 노인학대현황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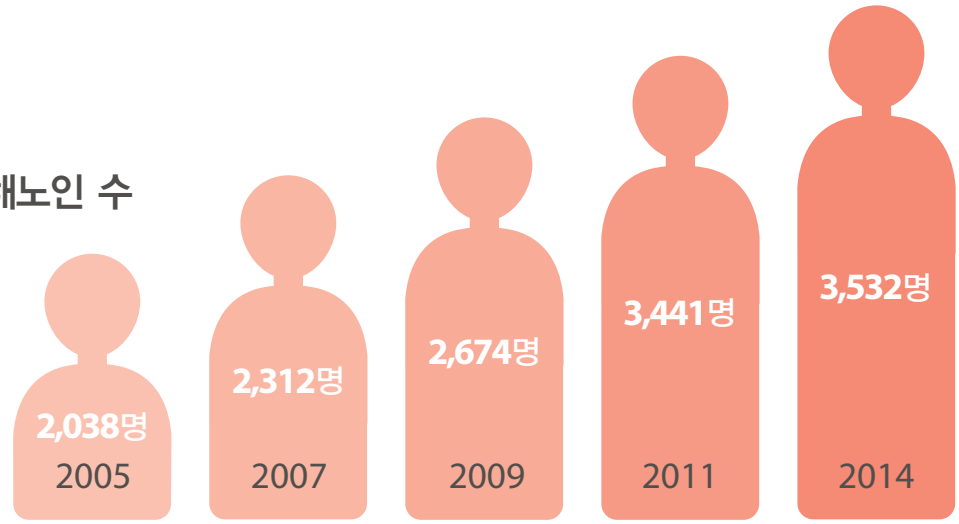

학대유형별 비율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 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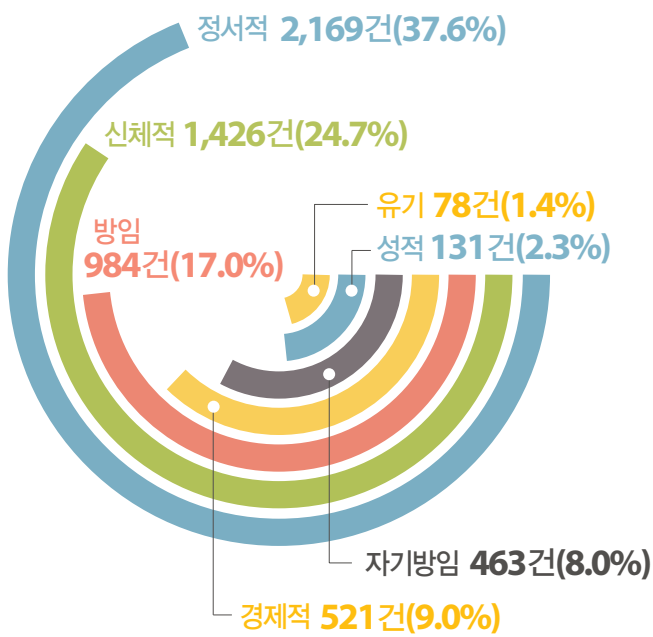

人 나는 신고의무인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위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61조의2제2항).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보호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위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인권 감수성"

- 사회적 약자는 권리 침해와 박탈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지켜지고 권리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 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 의 인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 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BO 노인학대 알아보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❶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❷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❸ 성 적 학 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❹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❺ 방 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❻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의 특성

❶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노인학대가 있어 왔음

❷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❸ 반복성 : 노인학대는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함

❹ 은폐성 : 신고를 꺼리며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학대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A요양보호사는 중증치매를 앓는 B어르신께서 비위관(콧줄)을 자꾸 빼서 걱정이 가득하다. 치매와 고령으로 인해 식사만으로는 영양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통해 영양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비위관을 빼는 바람에 사전 동의없이 양손에 억제대를 사용했다. 비위관을 다시 삽입할 때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이 경우 생명유지의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일시적으로만 신체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둡니다. 또한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신체적 제한에 대한 통지를 하며, '비상응급시 각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2013), 노인요양시설 업무매뉴얼 및 지침서, p.208 '비상응급시 각서' 참조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뭐라고?" "어르신,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내다보니 A할아버지와 B요양보호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A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이라 요양보호사가 반말 섞인 말투와 큰 소리로 말하다보니 흡사 싸우는 것처럼 보여 행여 보호자들이 보고 오해할까 걱정된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어르신 중에는 청력이 약해지거나 인지력 저하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큰소리로 말하기보다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어르신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반말을 하거나 이름만 부른다거나, 어린아이 대하듯 해서는 안 되며 직원 교육을 통하여 어르신들과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적 학대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시설 입소자 목욕문제로 보호자의 전화를 받은 K사무국장은 직원배치표를 골똘히 보고 있다.
보호자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아버지께 목욕서비스를 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설 내 요양보호사 중 남자직원이 너무 적어 모든 남자어르신의 목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인복지시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어르신께 가능한 어르신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서비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채용 등과 같은 방안으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입소계약서에 의거하여 동의한 사항을 어르신 및 보호자께 인지시켜드리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요즘 C어르신의 얼굴이 부쩍 어두워 보인다. 아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관리를 하는데 면회도 오지 않고 어쩌다 찾아오더라도 용돈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유롭게 물품도 구매하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C어르신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어르신의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보호자에게 권리를 위임했어도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르신 개인 소유 통장 등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어 어르신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에서 입출금내역 및 사용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두어야 하며, 분기별 또는 요청 시에 수시로 재정사용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임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할머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 보실래요?"
"… … "

얼마 전부터 말을 걸어보아도 대답도 안 하시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계신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프로그램도 모두 싫다고 하시며 식사, 약 복용도 거부하시는 M할머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도 일손이 부족할 때는 M할머니에게 유동식을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에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먼저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상태를 알리고,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그 증세 등을 기록으로 남겨 추이를 살피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편의를 위해 일반식 섭취가 가능한 어르신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유동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혼자서 시간을 가지게 할 시에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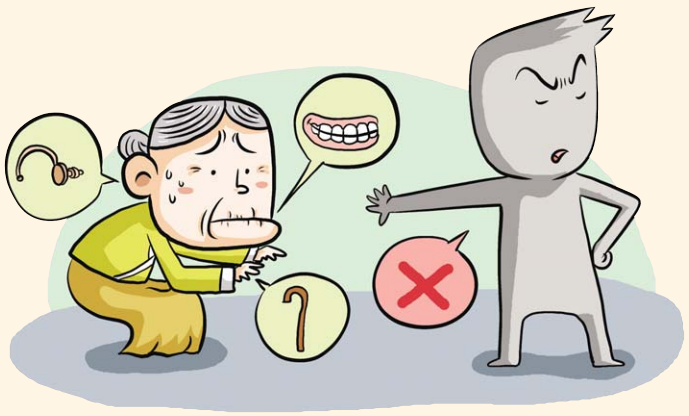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기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A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간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보호자로서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에 보호자에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면회, 전화통화 등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어르신의 전원 및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간(해당시설과 보호자)의 계약에 의한 사항이므로 입소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및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벗어난 영역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시설입소와 관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주민센터 및 해당시설이 협의하여 어르신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경제상황을 조사하고, 의도적인 유기여부에 대한 파악으로 해당 시설에서 직접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치(형사고발 및 민사소송)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HO 호互호護호好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1)]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①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⑥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보건복지부(201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역할

▶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①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해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입소어르신 및 종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② 신고를 받은 시설은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학대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확보 등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④ 시설의 장은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7인 이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장 및 시설 내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 중 4명 이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 입소어르신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

⑤ 학대사례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에 큰 위험이 초래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⑥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⑦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소개

'어떻게 도와줄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01 상담 및 신고
1577-1389로 전화

02 사례접수 및 접수판정
파악된 학대상황 정보를 통해 응급학대의심·학대의심·일반 사례로 분류

03 현장조사 및 사정
피해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정도 확인,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및 증거확보

04 노인학대 사례판정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 회의를 거쳐 응급·비응급·잠재·일반 사례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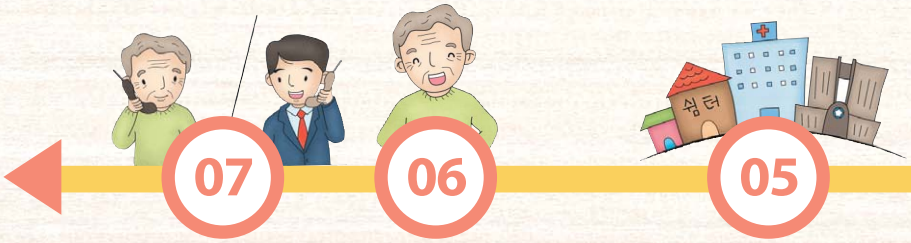

05 보고 및 조치(서비스계획 및 제공)
- 보고 : 사례판정 후, 지방자치단체 공문보고
- 조치 : 학대피해노인 후속보호조치(쉼터, 타 시설 이전조치 등), 학대행위자 및 시설 조치

06 평가 및 종결
-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
- 평가결과에 의한 종결여부 판단

07 사후관리
재학대 여부 확인 및 해당 시설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사례적용

① Z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K는 동료가 입소 중인 여성노인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 같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함
② **사례접수**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노인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응급학대의심사례**로 **접수판정**함
③ 신고접수 당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관할구청 담당자가 함께 동행,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CCTV와 시설종사자 및 입소노인과 **사정**을 통해 노인학대사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
④ 수집한 사실 증거를 바탕으로 **응급사례로 판정**되었으며 학대피해노인은 안전 및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함
⑤ •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행정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구청에 관련법을 근거로 사례판정결과 **보고**함
• 학대피해노인의 욕구에 따라 전문상담사와 심층상담 **서비스 제공** 후 타 시설로 이전**조치** 함
⑥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해당 시설장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분 내려졌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개선 확인을 통해 **사례평가** 후 **종결**함
⑦ 종결 후, 관할구청 내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강화 및 학대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함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소개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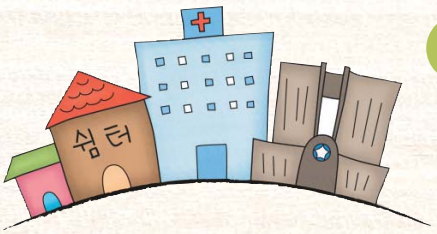

교육 —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상담 —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 서비스
- 일시보호, 의료지원
- 법률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협력체계구축 — 협력체계 구축사업
- 자문위원회,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노인인권보호 — 노인인권 보호사업
- 노인인식개선사업
- 효행교육

홍보 —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 이동상담 실시, 언론홍보, 학술행사, 캠페인, 카툰 및 사진 전시회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입소대상** : 만 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서비스 내용**
  - 법률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학대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의식주 등 쉼터 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지원
  -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퇴소(최대 4개월 입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양로시설(52개소)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학대 없는 세상,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 ☎**1577-1389**(1년3365일빨리구해주세요!)
짧은 전화 한 통이 학대로 고통 받는 어르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Silver Smile 이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생한 Silver Smile 브랜드는, 노인학대 없는 밝고 건강한 노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노인이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행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서울시 마포대로 182-10(공덕동 105-155) 성촌빌딩 2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